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타 보 고 서

의 안 번호 2376 2025년 2월 26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2월 3일, 최민규 의원 (찬성자 44명)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
다. 상정일자: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25년 2월 26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최민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 도로에서 하는 공사나 중장비들을 쓰는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나 유도자를 두도록 해서 안전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교통을 통제하고 중장비 사용 시 사각지대에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
- 신호수에 대한 안전은 관련 상위 법령의 규정이 미비하고 안전 교육도 4시간 건설 기초 교육만 받고 투입되다 보니 신호수가

현장에서 사고에 노출되어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○ 이에 따라 신호수가 안전하게 신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안전 장구와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례 에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도로상의 공사 시행 시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및 배치에 따른 안전장구·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(안 제 11조제2항제2호).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작업 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수립하는 교통관리 대책에 '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따른 안전장구·안전교육에 관한 사항'을 추가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도로상의 공사 시행) ① (생 략)	제11조(도로상의 공사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	②
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교통안내 신호수의 <u>배치</u> 에 관한 사항	2 <u>배치 및 배치에 따른 안전</u>
	<u>장구 · 안전교육</u>
3. · 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
■ 도로 공사장의 신호수 운영 현황

- 도로공사장 신호수는 차량계 건설장비를 이용하는 공사현장에서 차량의 진출입 유도와 공사장 주변 시민의 통행 및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건설 현장의 필수인력으로.
- 「도로법」제50조¹) 및 「도로의 유지·보수등에 관한 규칙」제 10조²)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유지·안전점검 및 보수

¹⁾ 제50조(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 등)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, 도로의 안전점검, 보수 및 유지·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되,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한다.

²⁾ 제10조(공사현장의 교통관리)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

를 위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'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.

- 현행 조례 제11조³)는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게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(제11조제 2항제1호),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(제11조제2항제2호),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(제11조제2항제3호) 등을 포함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4)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.
- 도로공사장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「산업안

^{4) 「}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[별표 1] 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

	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		관리자	
		ㅇ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	재난안전실장	
		o 차도관리(버스전용차로, 자전거전용도로·자전거전용차로 포함)	드 크 사이 시 자	
	서울	ㅇ 도로시설물(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 제외)	도로사업소장	
특별시도 도로		ㅇ 보도관리(측구,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)		
		ㅇ 차도 및 보도(지하보도 포함)의 청소(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·지하차도 내 기계	자치구청장	
		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은 제외)		
자동차	フトモ ラト	o 차도 및 보도 관리(청소 포함)	게하시시자	
	^중시 전용도로	ㅇ 녹지 및 가로수	재난안전실장	
	신 승 도도 	ㅇ 도로시설물	재난안전실장	

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^{1.}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

^{2.}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

^{3.} 우회소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

^{4.} 기타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③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시행자로 하여 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³⁾ 제11조(도로상의 공사 시행) ①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^{1.}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

^{2.}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

^{3.}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

^{4.}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

전보건법」제31조5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6)에 따라 채용 전 '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(4시간)'을 이수하여야 하며.

[표]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 관련)

교육내용	시간
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	1시간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	2시간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	1시간

○ 현장에 투입된 신호수의 배치 기준은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42조의27) 및 [별표 15의2]의 '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안전요원·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'에서 규정하고 있음.

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[별표 15의2]

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·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 (제42조의2 관련)

- 2. 안전요워의 배치 기준
 - 가. 배치 : 최소 1명 이상을 감속운행이 시작되는 지점(공사구간 전방 60미터에서 90미터 까지의 지점을 말한다)에 배치하고,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전방 500미터 부근에 추가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. 다만, 도심의 도로에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에 따라 거

⁵⁾ 제31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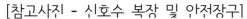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·내용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.

⁶⁾ 제28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·내용 및 방법 등)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(이하 "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"이라 한다)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,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.

⁷⁾ 제42조의2(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)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.

리를 축소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- 나. 임무 : 수신호와 깃발(야간에는 신호봉)을 사용하여 차마와 보행자를 통제하고, 안전을 유도한다.
- 다. 복장 :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, 야광밴드 등 고 휘도(高輝度) 반사장비를 휴대한다.





[출처: 신호수 안전관리 매뉴얼, 서울시설공단, 2022]

- 그러나 신호수는 안전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격이나 전문기술 없이 형식적인 4시간의 기 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
- 현장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사장 내외에서 안전통제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호수가 다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수 관련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.
- 참고로.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

는 총 1,247건이고 그중 신호수가 직접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 는 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.

[표]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현황

 구분	합계	2022년	한계 2022년	2023년	2024년
	202	2022	2020 [(9.30. 기준)	
공공공사	144	36	48	60	
민간공사	1,247	374	461	422	
신호수 사고	9	1	4	4	

(출처: 2024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#131)

-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신호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자 공사 감독 업무의 축적된 경험과 관계 법령 을 바탕으로 「신호수 안전관리 매뉴얼(2023)」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.
- 신호수 관련 실제 사고사례와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다양 한 상황을 '건설현장 신호수 행동요령'이라는 교육영상으로 제작 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육하고 있음.

「신호수 안전관리 매뉴얼] - 서울시설공단(2022)

- 1. 신호수 정의
 - 1.1 신호수 용어 정의
 - 1.2 신호수 복장 기준
 - 1.3 수신호 방법
- 2. 신호수 관련 법령
 - 2.1 작업지휘 및 신호(유도)가 필요한 작업
 - 2.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작업
 - 2.3 기타 참고 기준

- 2.4 신호수의 교육
- 3. 신호수 안전작업 수칙
 - 3.1 도로공사장 신호수 운용요령
 - 3.2 장비별 신호수 운용요령
- 4. 신호수 중대재해 예방대책
 - 4.1 신호수 재해예방 포인트
 - 4.2 공종별 중대재해 사고사례 및 신호수 예방대책

■ 개정안에 대한 의견

- 안 제11조제2항제2호는 「도로의 유지·보수 등에 관한 규칙」 에 따라 도로의 유지·보수 등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때, 교통 안내 신호수가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교 육을 충분히 이수하여 공사장 안밖에서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 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
- 현행 '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'뿐만 아니라 「산업 안전보건법」 및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등에서 규정하고 있 는 필수 안전장구·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통관리대책에 추 가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- 이처럼 신호수의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교육을 명확히 규정한 교통관리대책을 통해 신호수가 보행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효과 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현장에서의 신호수 관련 안전사고 및 중 대재해 발생이 크게 저감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- 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민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376 발 의 년 월 일: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:최민규 의원(1명)

찬 성 자: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
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 민병주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보양순, 서상열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 이민옥, 이봉준, 이상욱, 이정배, 이죽환, 이원형, 장태용, 정준호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4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도로에서 하는 공사나 중장비들을 쓰는 건설현장에서 신호수 나 유도자를 두도록 해서 안전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교통을 통제하고 중장비 사용 시 사각지대에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
- 신호수에 대한 안전은 관련 상위 법령의 규정이 미비하고 안전교육 도 4시간 건설 기초 교육만 받고 투입되다 보니 신호수가 현장에서 사고에 노출되어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신호수가 안전하게 신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안전 장구와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명 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로상의 공사 시행 시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및 배치에 따른 안전 장구·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(안 제11조제2항 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2호 중 "배치"를 "배치 및 배치에 따른 안전장구·안전교육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도로상의 공사 시행) ①	제11조(도로상의 공사 시행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	②
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	
되어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교통안내 신호수의 <u>배치</u> 에	2 <u>배치 및</u>
관한 사항	배치에 따른 안전장구 · 안전
	<u>ग्र झ</u>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2항제2호 중 "배치"를 "배치 및 배치에 따른 안전장구·안전교육"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김지혜

® 02-2180-7952

e-mail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